

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[] 재발급 [] 추가발급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①성명		②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③업소명			
	⑤주소 (전화번호:)			
⑤업체명(도축장 등)				
⑥발급번호		⑦발급일자	⑧등급판정일자	
신청내역				
⑨납품처명	⑩사업자등록번호	⑪부위명	⑫중량(kg)	⑬ (재발급·추가발급) 신청사유

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

제출서류	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: 헐어서 못쓰게 된 등급판정확인서	수수료 없음
유의사항		
1. 신청서는 이미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. 2.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와 잃어버린 경우 ⑨ ~ ⑫란은 생략합니다. 3. ⑪란은 대분할 부위명을 기재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분할 명칭을 적습니다. 4. ⑬란의 사유는 "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", "잃어버린 경우", "추가로 필요한 경우(납품: 학교급식, 음식점, 자체매장, 유통업체, 군납 등)"로 구분하여 기재 합니다.	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